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76 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 : 임광현・황 희・정성호

정준호 · 신영대 · 김성환

임오경 · 안태준 · 이기헌

박홍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는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·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·중 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취학 전 아동 및 초·중등학생이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능학원(음악, 미술 또는 무용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(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)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•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•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	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	
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	
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·3. (생략) ④ ~ ① (생략)

 -
 _
 _
 -
 -
 _
 _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취학 전 아동 및 초·중
등학생이 「학원의 설립・
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예능학원
(음악, 미술 또는 무용) 및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
시설에 지급한 교육비(학
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
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
해당한다)
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